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보

선 람	기관의 장

제570호

2007년 3월 19일 월요일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-13호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승인고시 2
-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-14호 주택재건축사업 변경인가고시 3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254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(안) 입법예고 4

회 람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문화공보과

고 시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-13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

주택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7년 3월 12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- 1. 사업명 : 석남동 민영아파트 신축공사
- 2. 사업주체 : 김창현 (주)천지인 종합건설 대표 김도영
- 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 - 가. 위치 : 서구 심곡동 560-18번지의 1필지
 - 나. 대지면적 : 1,205.6㎡
 - 다. 연면적 : 3,900.81㎡
 - 라. 사업비 : 4,776,882천원
 - 마. 사업규모 : 지하1층 지상9층 1개동 32세대
 - 바. 사업기간 : 2007. 4 ~ 2008. 2
- 4.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
 - “변경사항 없음”
- 5. 변경사항
 - 변경전 : 연면적 3,882.772㎡(용적율:248.65%),
 건축면적 402.730㎡(33.40%),
 건물전체높이 30.4m, 조경면적 192.47㎡, 총주차대수 39대
 - 변경후 : 연면적 3,900.810㎡(용적율:248.41%),
 건축면적 450.880㎡(37.40%),
 건물전체높이 31.4m, 조경면적 182.61㎡, 총주차대수 41대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-14호

주택재건축사업변경인가고시
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변경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7년 3월 12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- 1. 사업명 : 육일연립재건축아파트 건립공사
- 2. 사업주체 : 육일재건축조합 조합장 이도환 / 태훈종합건설(주) 대표 김영섭
- 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 - 가. 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23-2,3번지
 - 나. 대지면적 : 2,996㎡
 - 다. 연면적 : 14,648.878㎡
 - 라. 사업비 : 17,735,900,000원
 - 마. 사업규모 : 지상10층 / 1개동 / 93세대
- 4. 사업기간 : 2002. 2 ~ 2007. 4.
- 5. 사업시행인가일 : 2002. 3.21.
- 6. 변경사항 : 사업기간 2002. 2.~2007. 2. ⇒ 2002. 2.~2007. 4.

공 고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254호

**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
운영조례 시행규칙(안) 입법 예고**

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7년 3월 15 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조례명 :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(안)

2. 제정취지

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운영의 적정과 내실을 기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(안 제1조)
-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 (안 제3조 내지 제4조)
-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 (안 제5조)
- 직원의 정원 및 임면에 대한 규정 (안 제9조 내지 제10조)
- 보조금의 관리에 대한 규정 (안 제19조)

4. 의견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07. 4.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주민복지과장, 전화 : 560-4972)에게 서면 및 팩스(560-4327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(1)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(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(3) 기타 참고사항 등

5. 붙임 :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(안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운영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(이하“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장 운영위원회

제3조(설치)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의 운영 및 노인일자리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
3.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의 내부규정 제·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
4. 기타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소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위원 중 당연직은 구청의 주민복지과장 및 소장이 되며 위촉직은 서구의회의 의원, 노인정책 추진기관·단체장, 지역사회 유관기관단체장, 기타 노인복지 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⑤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위원장 등의 임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회의) ①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정기회는 연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-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.
- ⑤위원회의 의사록에는 회의결과를 기록하고,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당등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서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정원, 인사, 보수, 복무관리

제9조(직원의 정원)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의 직원은 소장, 부장, 팀장, 직원 등 4인으로 하되 필요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

제 10조(직원의 임면) ①직원은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소장은 구청장이 임용하며, 이하 직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용한다.

③직원의 임기는 2년이며, 매년 실적평가를 통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

제 11조(직원신분보장) ①직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, 강임,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소장의 정년은 65세로하고 기타 직원은 60세로 한다.

제 12조(자격요건)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<별표1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제 13조 (조직체계 및 임무)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의 조직체계 및 임무는 <별표2>와 같다.

제 14조(보수) ①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직원 보수지급 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.

②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직원의 보수는 봉급, 기말수당, 정근수당 등 제수당을 총합산한 연봉제로 한다.

③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며, 직원의 연봉지급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하며, 실적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연봉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반영할 수 있다.

제 15조(복무)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직원의 직원의 출장, 근무시간, 휴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4장 회계 및 재산관리

제16조(재원)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운영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구 보조금
2. 기타수익금 등

제17조(회계관리) ①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②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의 지도·감독을 받으며,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.

④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회계에 관하여는 「인천광역시 서구 재무 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8조(물품의 관리) ①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의 소장은 물품관리직원을 지정하여 물품의 취득, 보관, 폐기 등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전반사항을 관리한다.

② 물품 및 장비관리는 「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9조(보조금 관리) ①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소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, 지출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 기타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20조(자료요구 및 검사)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는 구청장이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때 제출하여야 하며, 검사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21조(결산)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결산서 1부.
2. 사업실적보고서 1부.
3.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.
4. 운영위원회 의사록 사본 1부.
5. 운영위원 및 직원명부 1부.

제5장 공인관리

제22조(공인) ①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인천광역시서구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소장 직인
 2. 인천광역시서구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센터운영위원장 직인
 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
- ②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<별표3> 과 같다.
- ③공인의 관리는 소장이 하며 기타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서구공인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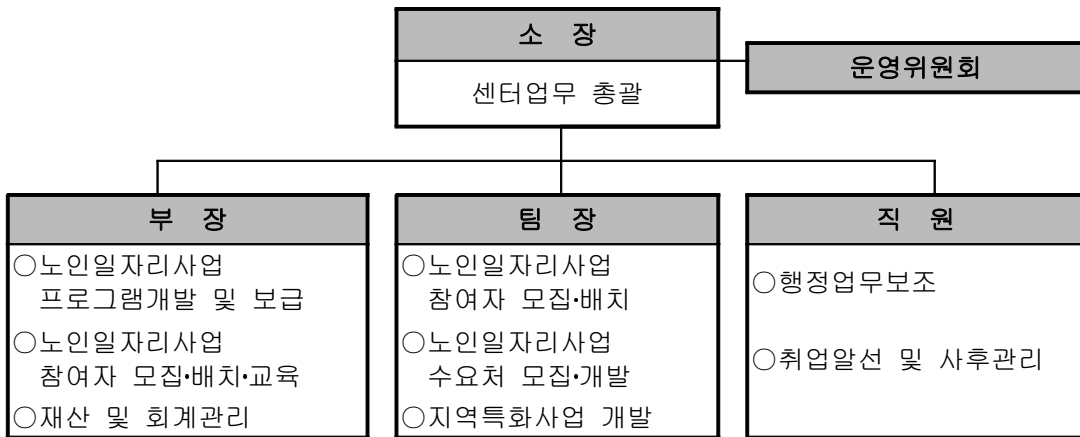
[별표 1]

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직원 자격 기준

구 분	자 격 기 준
소 장	1.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.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. 지역사회복지 또는 노인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활동 경험이 5년 이상 있는 자
부 장	1.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조교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.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. 지역사회복지 또는 노인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활동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 5.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
팀 장	1.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. 지역사회복지 또는 노인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활동 경험이 2년 이상 있는 자 4.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
직 원	1. 전산기사,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 관련자격증(2급 이상)을 소지한 자 2.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[별표 2]

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조직체계 및 임무



[별표 3]

인천광역시서구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운영위원회위원장인

3cm	
인천광역시서구 노인인적자원관 리센터운영위원 회위원장 인	3cm

인천광역시서구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소장인

3cm	
인천광역시서구 노인인적자원관 리센터소장 인	3cm